# 자영업활동계획서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신청자<br>(수급자격자) | 성명 | | 주민등록번호 | |
| | 주소 | | 전화번호 | |
| 사업예정일 | □개인 □법인<br>□자유직업종사자 | | 예상<br>사업기간 | □1년 미만 |
| | | | | □1년 이상 |
| 사업내용 | 업종: | | 예상 근로자수(사업개시기준): 명 | |
| | 자본금: | | | |
| | 자금조달방안: | | | |
| 사업장소 | 1지역(희망): | | 2지역(희망): | |
| 사업개시<br>추진일정 | 시장조사 | 기간: | | |
| | | 내용: | | |
| | 시장장소 입차: | | | |
| | 직원 모집광고: | | | |

가. 이직자가 재취업보다 자영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경우에는 「자영업활동계획서」를 제출하고, 동 계획서 일정에 따라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개시 1~2개월 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미리 방문 상담)

나. 「자영업활동계획서」의 '업종 등'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복지센터 직원과 반드시 상담을 하여야 하며, 「자영업활동계획서」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(자영업 → 구직활동, 구직 → 자영업 전환, 자영업 희망 업종 변경 등)

다. 이직자가 자영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다른 실업인정일에 「자영업활동계획서」를 제출하고 동 계획서대로 자영업 개설을 위한 준비활동을 하여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
※ 사업개시일: 개인(사업자등록증 상의 '개업연월일')
법인(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'등기일')

라.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실업상태가 아니었거나(일을 하였거나 자영업·보험모집인·채권추심원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소득이 발생) 가사·무보수 사회봉사 등에 종사하였거나, 기타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, 동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중지, 부정수급액 배액징수, 지급받은 실업급여액 반환,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
년 월 일

구직급여 수급자 (명)